

시설공사 수의계약 전적제출 안내공고

(수의전적-총액 / 적격심사 비대상 / 전자전적제출)



1. 전적에 부치는 사항

- 가. 공 사 명 : 연주로(주문진읍사무소일원)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
 나. 공사현장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39-1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상호진출 비허용), 유지보수공사
 마. 공사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 A=3,424㎡
 바. 기초금액 : 금32,810,000원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제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	관급자 관급
(A)+(B)+(C)	(A)+(B)	(A)	(B)	(C)	
93,810,000	32,810,000	29,827,273	2,982,727	61,000,000	-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8. 28.(금) 10:00 ~ 2026. 9. 1.(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전적)서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화) 11:00

나. 장소 : 강릉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전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요건을 갖춘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 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의 소재지가 강릉시내 지역**인 업체(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이어야 하며,

다. 본 입찰(전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례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이면서 입찰(전적)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5. 전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공사는 전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전적 및 전자입찰(전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 공사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전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100분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반드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 시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 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의거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서 송신 시 추천한 예비가격 추천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천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안내

- ①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근호) 제1장제9절에서 정한바에 따라,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 ③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최근호)에 따라
- ④ 품질시험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 ⑤ 입찰금액 산정 시에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금액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⑥ 또한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총 계	건 보 험 료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관 리 비	안 전 관 리 비	품 질 시 험 비
4,045,244	-	-	-	-	514,364	3,530,880	-	-

※ 당초 설계서의 계상 위치와 관계없이 정산 대상입니다.

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①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낙찰자는 강릉시 조례 제1304호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강릉시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강릉시)에서 우선 구매
-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강릉시) 사용
- ④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서 체결(추정가격 10억 이상)

타.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4조의4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각종 대가수령 시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파. 본 입찰(견적)은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견적) 참가자는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사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견적)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최근예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 정보 제공처

- 가.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감독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과 (☎033-660-3195)
- 나. 입찰 공고 관련 문의처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행정과 (☎033-640-5804)
-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의 「열린정보」 - 「법령정보」 - 「훈령/예규」와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이행요청서, 관련 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한 후 보낸 문서함에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시스템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이 있을 경우 전원해당)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익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2>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강릉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공직자 부조리 신고시스템」 운영

강릉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1: 시청 홈페이지(www.gn.go.kr) 접속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부조리신고
- 방법2: (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감사관
- 방법3: 전화신고 (강릉시 감사관: 033-640-5033)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연락처	주소	[] 단체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⑥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